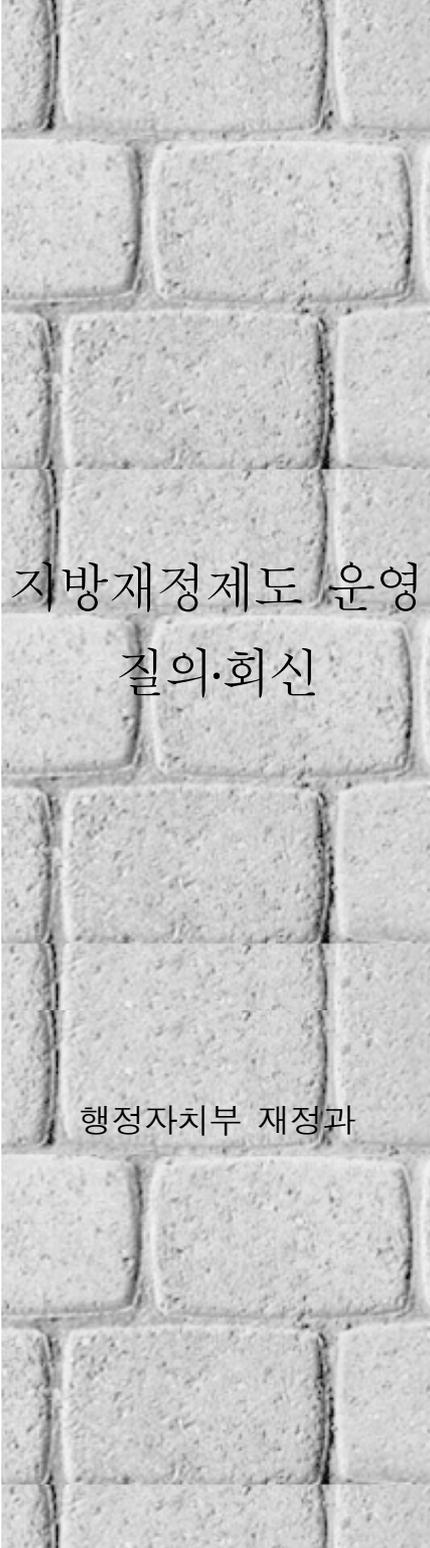


◆ 질의와 회신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자치부 재정과

회계·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질 의】

공사시공 중 공동수급체 부도로 1개사가 최종 준공하고 계약 공사 전체분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실적 인정범위는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제99호)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시공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 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 단위 구조물의 하자보증서를 차수별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각 사별 하자보증비율에 따라 규모 및 금액을 인정하여 평가함.

2.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시공실적의 평가를 최종 준공된 실적인지 아니면 기성 준공된 실적도 인정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99호) <별표 1>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시공실적 심사기준은 다른 법령이나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최종 준공된 실적으로 평가하되, 예외적으로 시공중인 장기공사(계속비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실적으로 인정함.

3.

【질의】

A라는 회사는 B라는 주식회사로부터 분할하면서 B사의 목적사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만 승계하였고 분할되는 B회사의 채무중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특별결의를 한 경우 B사의 실적을 A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99호) <별표 1>에 건설공사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분할한 경우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분할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제출된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4.

【질의】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분야)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 하수관거공사 준공실적”으로 제한하고 평가기준규모를 제시한 경우

- 실적인정 대상은 1건의 공사 실적인지, 여러건 공사의 합산실적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1>에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고,
 -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란 해당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제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하며,
 -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의미하나,
- 질의사항에는 인정범위(10년 이내 하수관거공사)와 평가기준규모만 명시되어 있고, 실적인정규모(제한규모)의 유무에 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계약상황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5.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실적인정에 해당하는 “1건의 공사실적”의 의미는

회 신

- 공사의 실적인정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별표1>에 의거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 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의미함.

6.

【질 의】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을 한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실적인정 범위는

회신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 전문건설업자(하수급자)의 실적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별표1〉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7.

【질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99호)」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공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8.

【질의】

입찰공고문에 “낙찰업체는 당해공사의 하도급금액중 30%이상을 ○○도내 주된 영업소를 둔 전문건설업체와 의무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설공사비 100억원이상인 부대입찰(내역입찰)공사에 있어

- “낙찰업체”를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로 판단하여 행자부예규의 하도급관리계획(지역의무 하도급비율 20%이상, 총하도급비율 40%이상)의 규정에 따라 20%로 제출하여 입찰시 적격심사 1순위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를
- 입찰공고문상에 지역업체 의무하도급 비율을 30%이상으로 제시한 것을 이유로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89호)」 제6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제1항에 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이상)에 의한 하도급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고,
- “낙찰업체(자)”라 함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등에 정한 낙찰조건에 적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자로 결정된 자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입찰내역서의 하도급사항,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입찰공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89호)」 제6조(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제1항에 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이상)에 의한 하도급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토록 규정되어 있고,
- “낙찰업체(자)”라 함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등에 정한 낙찰조건에 적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자로 결정된 자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이 입찰내역서의 하도급사항,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입찰공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9.

【질 의】

기존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있어 과거실적 승계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분할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분할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됨.

10.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실적인정범위에 있어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이행한 공사실적의 인정범위는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 내에서만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함.

11.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있어 입찰공고상에 입찰참가자격을 도로개설공사 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현장설명시 개설공사의 의미를 신설공사 실적만 인정한다고 한 경우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일부 포함된 개설공사 실적을 제출한 업체의 실적인정 가능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 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범위”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도로공사에 있어 단순한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확·포장의 경우는 토공·보조기층·포장공종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로확·포장공사도 도로 개설공사 실적에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질의사항과 같이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에서 현장설명시 도로개설공사의 실적인정 범위를 도로신설공사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현장설명참여자(업체) 모두에게 인지토록 한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전원이 사실 다툼이 없다면, 도로개설공사의 실적평가는 도로신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12.

【질 의】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의 공동수급체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에 있어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의 법률적 효력범위는

【답설】 파산법에 의거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파산취소, 강제화의, 파산폐지의 결정을 통하여 파산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고, 상법에 의거 회사가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종결의 등기를 완료하였거나, 상법에 의한 청산종결의 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을설】 법률적으로 완전 소멸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향후 부도업체가 갱생하여 동일공사의 시공부분에 대해 이중으로 실적을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사실상 회사를 계속할 의사 및 가능성의 존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법 의한 파산선고 등기 및 상법에 의한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이 실효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회 신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 1>에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에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체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의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거 청산(파산)절차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경우를 의미함.

13.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납품 및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가 조합으로부터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경우에 이를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 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범위”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과거의 물품납품에 관한 계약이더라도 해당 공종에 시설공사의 시공실적이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확인하였고 당해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시공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임.

14.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 ① 실적평가 기준연도는
- ②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적격심사는 관련협회자료(최근3년)로 평가할 수 있는지
- ③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업종실적 전체로 하는지 아니면 동일종류의 실적으로 평가하는지

회신

- 질의①, ②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공사실적의 기준연도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관련협회가 있는 업종에 있어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시공경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를 하여야 함

◦ 질의③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 1>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로 평가하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로 시공경험평가를 하여야 함.

15.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과거의 준공한 실적이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경우에 시공실적 확인서류인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 관계서류”의 발급확인 기관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과거의 준공한 실적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분의 실적 등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인·허가서류는 사업지역의 관할 공공기관에서 공사준공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임.

16.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과거의 준공한 실적이 민간발주공사로 민간기관이 준공확인을 하였으나, 관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과거의 준공한 실적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분의 실적 등을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 발주기관이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거 관할 공공기관에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실적에 한하여 당해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함

17.

【질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보처리장치 관리·운용자를 별도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처리장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용자도 별도로 지정치 않아도 될 것임.

18.

【질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국가계약법 및 행자부예규에 의한 입찰 및 계약하는 방법 외에 본원 자체사업으로 집행가능 여부

회신

-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보조권자의 보조조건에 보조금 집행(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집행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법인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후 정산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19.

【질 의】

민간투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구간(2공구)과 연결되는 1공구와 3공구의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설계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125억원을 민간투자사업비에 충당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 3공구 공사를 설계가 대비 100%에 수의계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능여부

회 신

- 당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의규정에 의거 제2공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연결되는 1, 3공구를 참여 민간사업 시행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내용이나 동공사는 도로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재검토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금액은 예정가격을 작성비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임.

20.

【질 의】

공사비가 33,972백만원인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적격심사를 통하여 기술능력, 시공능력 및 신인도와 재정상태가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장 부근에 공사집행에 필요한 다량의 자재가 있어 매립토 육성운반비, 환경대책비용 등 지방재정 수지 측면에서 약 7,295백만원 ~ 12,385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나목에서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거나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나목에서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거나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21.

【질 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시공(현공종 15%)함에 있어 신규공사 발주예정인 도로연결교량가설공사를 동일지역 현장 중목을 피하고 원활한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 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금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 “작업상의 혼잡”등의 사유는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2인이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임.
-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상태, 공사착공예정일 등을 종합고려하여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22.

【질 의】

○○도에서 1994년도 ○○만권 광역개발계획을 ○○엔지니어링에 수의계약으로 용역하

고 1997.12월경 ○○배후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지시와 관련 도재정 1억원을 지원하면서 위 ○○엔지니어링에 1억8,610만원에 수의계약토록 하여 ○○군에서는 이를 수의계약하였음.

이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적법한지 여부와 ○○도에서 도재정 1억원을 ○○군청에 지원한 사항에 대한 적법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등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본계획수립의 구체적내용, 특성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임. 아울러 ○○도 재정1억원 지원의 적법여부는 ○○도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23.

【질 의】

우리사에서 ○○군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신행정타운 찾집관거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신행정타운 찾집관거공사에 대하여 우리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에 “공사에 있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실제 곤란한지 여부는 양(兩)공사의 설계도면, 현장상태를 보아 당해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24.

【질 의】

○○시 ○○구 보건소 신축설계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건축분야만 설계공모하여 계약상대

자를 선정된 후 전기분야는 건축분야로 선정된 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공모에 당선된 자가 건축분야 업체라면 동업체와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임.

25.

【질 의】

음식물쓰레기 지원화 기계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자 하나 계약을 체결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는 제조로 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에 제조할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장등록 허가 또는 공장임차 사용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 바
- 수의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

26.

【질 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 설립된 재향군인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계약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다목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인 계약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7.

【질 의】

○○협동조합의 ○○업이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련단체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6호나,바목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함.

28.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용역계약에 있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화사업을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용역을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당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화사업을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